#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이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902

발의연월일: 2020. 11. 3.

발 의 자:임이자·허은아·추경호

김기현 · 이종성 · 이만희

김형동 • 권명호 • 이주화

이종배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장제를 실행하기 전에는 장의비를 받을 수 없음. 실제 지난 4.29. 발생한 한익스프레스 이천물류센터 화재 사고로 인하여 38명이 사망하였음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제를 지낼 여력이 없는 유족들이 산재보상 대상임에도 장의비를 선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.

이에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장제를 지내기 전이라도 장의비의 최저 금액 내에서 미리 청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게 보상하도록 하고자 함(안 제71조제3항 부터 제5항까지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1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유족은 장제를 지내기 전이라도 제2항에 따른 최저 금액을 장의비로 미리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급권자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한다.
- ④ 제3항에 따른 장의비는 장제를 마치기 전까지 청구하여야 한다.
- ⑤ 제3항에 따라 장의비를 지급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의비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1조(장의비) ①・② (생 략)	제71조(장의비) ①・② (현행과
	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
	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것
	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유족
	은 장제를 지내기 전이라도 제
	2항에 따른 최저 금액을 장의
	비로 미리 청구할 수 있다. 이
	경우 수급권자의 결정에 관하
	여는 제65조를 준용한다.
<u>&lt;신 설&gt;</u>	④ 제3항에 따른 장의비는 장
	제를 마치기 전까지 청구하여
	<u>야 한다.</u>
<u>&lt;신 설&gt;</u>	⑤ 제3항에 따라 장의비를 지
	급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
	따른 장의비는 제3항에 따라
	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
	금액으로 한다.